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김영래 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라.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17조,「도로교통법」 제93조
○ 기 타 : 조례안예고(2019. 8. 26 ~ 2019. 8. 3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화 하는 것으로써,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만 70세 이상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